##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사법검찰기관이 인민 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

최 광 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에서다.》

사법검찰기관의 자랑찬 력사의 갈피에는 해방직후 사법검찰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정권건설에서 이룩하신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법건설사상을 내놓으시고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사법검찰기관이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사법검찰기관이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사법의 민주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것이다.

해방직후 인민의 사법검찰기관을 세우며 민주주의적법을 제정실시하는것은 새 조선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하신 강의에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제의 파쑈적식민지통치기구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우며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법의 민주화방침은 우리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였던 일제의 파쑈적인 사법검찰기구와 악법들을 철저히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 적이며 인민적인 사법검찰기관을 세우며 민주주의적법률을 제정실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사법검찰기관을 창립하여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근 반세기동안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법검찰기관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더우기 안팎의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종파분자들은 인민의 사법검찰기관을 세우는 사업을 필사적으로 방해해나섰으며 앞으로 창립될 사법검찰기관을 비롯한 독재기관들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리용해보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급적원쑤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인민 의 사법검찰기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9월 각 지방들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혼란된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며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온 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건국사업의 성과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지방정권기

관인 인민위원회와 함께 지방사법검찰기관을 조직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나갔다.

전국각지에 조직된 지방사법검찰기관들은 해방후 혼란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원쑤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사법검찰기관들이 조직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는데 맞게 사법검찰기관의 중앙조직을 내오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법검찰기관체계를 정연하게 세우 는것은 성숙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법검찰기관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 34(1945)년 11월 중앙행정적지도기관인 행정10국을 조직하시면서 그 한개 국으로 사법 국을 내오시여 인민의 검찰, 재판기관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북조선사법국은 북조선의 검찰, 재판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중앙적인 법기 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법검찰기관을 창건해주신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력사 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사법검찰기관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당과 수령을 정치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고 인민 의 권리와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해나갈수 있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적인 법들을 제정실시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형사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을 민주주의적으로 새롭게 제정실시하여야 하였다. 새 조선건설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인 법을 제정실시하여야 사 법검찰기관을 민주화하고 건국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바쁘신 속에서도 사법국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주체35(1946)년 2월 7일 북조선사법국, 검찰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사법국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법을 제정실시하는데서 새 조선건설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검찰, 재판기관들을 민주화할수 있고 우리의 법률제도가 민주건국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신 후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주체35(1946)년 3월 6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민주주의 적사법검찰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에 따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체35(1946)년 5월 《북조선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 주체35(1946)년 6월 《북조선의 검찰소예심 및 보안기관의 형사사건심리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법제정원칙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민주주의적사법검찰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심으로써 북조선사법국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자주독립국

가건설의 요구를 반영한 법을 제정실시하여 사법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을 민주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사법검찰기관이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검찰, 재판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민주주의독재대상을 바로 규정함으로써 사법검찰기관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법검찰일군대렬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의 일 군들을 기본으로 하여 튼튼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사법검찰일군들을 어떤 출신들로 꾸리는가 하는것은 사법검찰기관이 자기의 혁명적성 격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새 조선건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중요 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시고 주체35(1946)년 2월 7일 북조선사법국, 검찰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로동자, 농민출신일군들로 사법검찰일군대렬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출신일군들은 법에 대한 지식과 검찰, 재판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애국심과 건국열의가 높기때문에 배워주면 이 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로동자, 농민출신의 좋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등용하여 재판소, 검찰소들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지난 시기 일제의 사법, 검찰기관에 복무하면서도 민족적량심을 버리지 않고 혁명가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재판소, 검찰소들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검찰소와 재판소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의 일군들로 꾸리도록 하신것은 사법검찰사업에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비롯한 내외의 반동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할수 있도록 한 혁명적인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대상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와의 투쟁을 힘 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혁명의 투쟁대상이 달라진 조건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대상도 달라지게 되였다.

해방전에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 혁명의 주되는 투쟁대상은 일본제국주의였다. 그러나 일제식민지통치가 전복된 해방후 첫 시기 일본제국 주의의 주구들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지 않고서는 일제잔재세력을 철저히 청산할수 없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할수 없었다.

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미제와 남조선반동들과 결탁하여 공산당청사를 습격, 파괴하고 핵심공산당원들을 구타, 살해하며 일부 군중과 순진한 청년학생들을 추동하여 새 조선건설을 반대하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공개적으로 반항하여나섰다. 한편 해방직후의 복잡한틈을 타서 정치기관과 사회단체안에 기여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우당, 종교단체안의반동분자들도 우리의 혁명력량을 분렬, 파괴하고 새 조선건설을 파탄시키려고 획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울수 없고 나라의 민주화를 실현할수 없다고 하

시면서 따라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의 법적투쟁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주체35(1946)년 2월 7일 북조선사법국, 검찰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해당한 법령이 없다고 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재판하지 못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사법검찰기관에서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립각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반동분자들을 낱낱이 적발숙청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작성하시여 주체35(1946)년 3월 7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규정에서는 일제의 조선침략당시와 조선통치시기 일제식민지통치에 적극적으로 복무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한자에 한하여서는 죄상을 감면할수도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그러나 당시 사법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 일군들속에서는 규정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규정을 해석적용하는데서 이 규정에 엄격히 의거하면서도 매 사람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 치고 건국사업에 열성을 기울이고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게 처리할데 대한 원칙 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규정을 해석적용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사법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 일군들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의 투쟁에서 좌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극복하 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따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의 투쟁을 정확히 진행하여 주체적력 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였다.

우리는 해방직후 사법검찰기관이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여야 할것이다.